

2005. 5. 31(화) 10:00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1.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5.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총 무 위 원 회

①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 5. 18 신전규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2005. 5. 19

다. 의안번호 : 제2005 - 29호

라. 상정일자 : 2005. 5. 25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어려운 계층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의 주민이 위급상황 발생시 별도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훈대상자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지원내용은 긴급구호비 및 급식비, 월동대책비, 위문금·품,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결식아동 및 학자금, 저소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며, 본인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실태조사 후 군수가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유사성격의 기금으로 운용중인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 용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3,624명) 예산 52억3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1998.4.30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송파구청등에서 제정·시행하는 조례로서 지원자 결정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의 내용처럼 관련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조례가 목표하는 대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②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5. 19

다. 의안번호 : 제2005 - 26호

라. 상정일자 : 2005. 5. 25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과 단위 전담기구 설치
- 2005. 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현행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직개편

나. 주요골자

- 군의 본청에 실과설치 및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
(안 제3조)
 -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함.
 -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
 - 직제순서와 일부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산림환경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신설),

- 본청 실과의 소관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함.

실과별	이관받은 업무(담당)	이관한 업무(담당)	신설업무 및 담당
기획감사실	홍보, 정보통신	혁신분권	
종합민원실	식품위생, 산업민원	건축관련 복합민원	복합민원담당
행정과	혁신분권, 주민자치	정보통신	공무원단체담당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경제과		미래산업(폐지)	마케팅담당
문화관광과	박물관, 도서관업무	공보, 청소년업무	스포츠레즈담당 이벤트팀
사회복지과	청소년, 재가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획담당
산림환경과		토석채취, 형질변경	수질관리담당
건설과		재해재난 종합관리	보상팀
도시건축과	건축관련민원	골프장팀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120봉사대		재난관리, 복구지원

○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략개발, 교육지원, 전략사업 추진을 담당토록 사무를 분장함(안 제4조)

○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를 통합하는 “농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교육문화센터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과 군립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실시한 후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동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거창군의 전반적인 조직내용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5. 5. 20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직개편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

- 실과명칭을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종합민원실→열린민원실, 경제과→경제통상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 분장사무 중 외래어로 표기된 경제과의 마케팅은 판로개척으로 문화관광과의 스포츠레저는 여가문화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 교육문화센터의 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변경 시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이(연간 9천만원) 중단됨으로 종전대로 사회복지관으로 표기함.

○ 요구사항 중 마케팅담당과 상공담당간의 업무중복성으로 통합, 공무원단체담당의 신설대신 기존 서무담당에서 담당,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담당의 통합, 농업기술센터의 생활문화담당의 존치 필요성, 문화관광과의 등산로 개발업무를 여기담당으로의 업무이관 등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할 사항임.

○ 부칙 제2조의 각항은 부서명 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실과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나, 4항부터 11항까지는 종전 행정기구조례 개정 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여 금회 조례 개정시 변경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농업기술센터 내 담당직렬 조정 시 지도사와 일반직간의
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용 철저
- 신설되는 담당의 수가 너무 많으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담당신설 억제
(공무원단체, 수질관리, 생활문화, FTA, 교육지원담당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③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5. 19

다. 의안번호 : 제2005 - 26호

라. 상정일자 : 2005. 5. 25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과 단위 전담기구 설치

○ 2005.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지원과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 신설업무에 따른 정원승인

나. 주요골자

○ 거창군 공무원의 정원을 644명에서 668명으로 정원조정

1. 집행기관의 정원 : 630명 $\Rightarrow$ 654명(증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규정을 둠(안 제3조)

○ 집행기관 한시정원 4명중 1명은 2006. 12. 31일까지로, 3명은 2007. 6. 30일까지로 두도록 규정(안 부칙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설치와 신설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원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금번 조정된 정원은 최고정원을 기록한 1995년의 701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2001년도의 555명에 비하여는 113명이 증원된 것임.

- 인력증원(24명)에 따른 소요예산액(입법예고) : 968백만 원

· 5급1/66,852, 6급5/250,267, 7급/5 211,592, 8급8/213,941 9급5/123,450천 원

○ 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 5. 20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요구한 일부신설담당의 적정인원 배치요구 사항, 과도한 담당신설 억제 등은 집행부에서 규칙제정 시 반영할 사항임.

- 별표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첨부한 것임

- 6급이 종전보다 6명 증가된 것은 승인 5명(재난2, 조사평가1, 공무원단체1, 조사평가1)과 일반직 적용비율 27%에 따라 1명의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임.

○ 동 조례개정안은 2005.4.19 및 2005.5.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존에 비하여 24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④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5. 19
- 다. 의안번호 : 제2005 - 22호
- 라. 상정일자 : 2005. 5. 25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와 통합·운용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설치토록 하고 기금의 재원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용자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개인과 기관·단체 등으로 자활지원, 기관육성, 복지증진, 연구 등을 위한 용자사업으로 하되 복지증진 사업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로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제1,2항), 생활안정기금은 개인으로 소규모 영세사업, 재난 시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자금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융자한도액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천만 원, “생활안정기금”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융자 시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함 (안 제6조)

○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함(안 제8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거창군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안 제11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5조의 대부이율 연 3%와 연체이자율 15%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1991)할 당시와 동일 수준의 것이나, 융자대상이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중 제3항의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령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이를 인용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제상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동 기금의 융자이율 3%와 연체이율 15%는 융자대상자가 어려운 계층의 주민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것이므로 이를 하향조정하고,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합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생략)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생략)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 ①,②생략 ③기금 융자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 ①,②생략 ③-삭제함- ③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례안 제5조의 대부이율 3%는 2%로, 연체이자율 15%는 7%로 하고, 제6조 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은 3항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⑤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5. 19
- 다. 의안번호 : 제2005 - 23호
- 라. 상정일자 : 2005. 5. 25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존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중.고등학생을 지급대상자로 하되,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규정함(안 제8조)

○ 장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조정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점수미달, 휴학처분, 전출, 저소득층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3조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와 “잡수입” 상충되는 내용으로 문구의 성격상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의 제1항의 일반장학생의 자격으로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를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규정한 것으로 장학금성격보다는 학자금 지원성격인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대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9조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라는 사항 중 “예산”이라는 용어는 예산과 기금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조례의 내용 중 “기타 잡수입금”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구는 “기타 수입금”과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 략- 1. 2 (생략) 3.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생 략- 1. 2 (생략) 3.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 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 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지출 계획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례안 제3조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제9조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는 “매년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수정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5. 5. 2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5. 20

다. 의안번호 : 제2005 - 30호

라. 상정일자 : 2005. 5.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교육도시로의 기반조성과 명문학교 육성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장학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2005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중 50,000천 원을 장학사업으로 실시함.
- 장학금 지급대상은 관내 중고·대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정
 - 명문대진학자 등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대상 선정
- 대상자 접수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함.
-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재단 설립과 연계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장학사업계획은 기존의 댐건설 주변지역 대상읍면인 5개 읍·면면 외 거창군 전체지역 중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창지역의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거창군 육영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으로 장학금 설치 조례제정과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은 군 계획확정후 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 또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을 위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 기금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의 기금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동의)